

이문 아이파크 자이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https://www.i-park.com/imun>)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분양일정과 청약 및 상품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문 아이파크 자이'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청약과 관련된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https://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20**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담청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1순위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 및 '분양권 등')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또는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지역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

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내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park.com/imun)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와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

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며,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아파트로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법행위 등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 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분양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불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은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기재금액)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자격확인서류 접수기간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정	2023.10.30.(월)	2023.10.31.(화)	2023.11.1.(수)	2023.11.08.(수)	2023.11.9.(목) ~ 2023.11.17.(금)	2023.11.20.(월) ~ 2023.11.24.(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 ~ 17:00)	당사 견본주택 방문계약 (10:00 ~ 17: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문 아이파크 자이 견본주택 방문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등을 지참 ■ 구비서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홈페이지 참고 ■ 서류접수건수 과밀로 인한 일정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문 아이파크 자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 ■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점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11566호(2023.10.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 412-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41층, 25동 총 4,321세대 중 일반공급 1,4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685세대(일반기관추천) 136세대, 다자녀가구 133세대, 신혼부부 250세대, 노부모부양 44세대, 생애최초 12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3-1BL(1,2단지)과 3-2BL(3단지)은 지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으며, BL별로 준공 및 입주시점이 상이함.
 3-1BL(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모델번호 01~05, 09~11, 17, 18번 세대 해당) : 20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3-2BL(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412-1번지 일대, 모델번호 06~08, 12~16번 세대 해당) : 2026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m)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548	01	020.8000A	20A	20.8000	9.2926	30.0926	18.5945	48.6871	7.0906	77	7	-	13	2	6	28	49	5
		02	041.6000A	41A	41.6000	16.7352	58.3352	37.1891	95.5243	14.1812	9	-	-	1	-	-	1	8	-
		03	059.9100A	59A1	59.9100	22.2529	82.1629	44.0628	126.2257	19.0495	360	35	36	63	11	31	176	184	18
				59A2	59.9100	22.6088	82.5188	53.5576	136.0764	20.4230									
		04	059.9500B	59B1	59.9500	23.3735	83.3235	44.0922	127.4157	19.0622	366	35	36	65	11	32	179	187	17
				59B2	59.9500	23.7297	83.6797	53.5935	137.2732	20.4366									
		05	059.9600C	59C	59.9600	22.1924	82.1524	53.6025	135.7549	20.4400	241	24	24	43	7	21	119	122	8
		06	059.9600D	59D	59.9600	18.8645	78.8245	50.4785	129.3030	105.9015	3	-	-	-	1	-	1	2	1
		07	059.6700E	59E	59.6700	18.8394	78.5094	50.2343	128.7437	105.3893	30	3	3	5	1	2	14	16	9
		08	059.9500F	59F	59.9500	20.1523	80.1023	50.4701	130.5724	105.8839	12	1	1	2	-	1	5	7	3
		09	084.9500A	84A	84.9500	29.8578	114.8078	75.9428	190.7506	28.9590	146	14	14	26	4	13	71	75	9
		10	084.9500B	84B	84.9500	31.1078	116.0578	75.9428	192.0006	28.9590	49	4	4	8	2	4	22	27	3
11	084.9200C	84C	84.9200	30.5396	115.4596	75.9160	191.3756	28.9488	83	8	8	14	2	7	39	44	5		
12	084.9200D	84D	84.9200	25.3953	110.3153	71.4916	181.8069	149.9860	36	3	3	6	1	3	16	20	10		

	13	084.6000E	84E	84.6000	25.0435	109.6435	71.2223	180.8658	149.4208	12	1	1	2	1	1	6	6	4
	14	084.8400F	84F	84.8400	25.5274	110.3674	71.4243	181.7917	149.8447	4	-	-	-	-	-	-	4	1
	15	084.7700G	84G	84.7700	25.5417	110.3117	71.3654	181.6771	149.7210	15	1	1	2	1	1	6	9	6
	16	099.5200A	99A	99.5200	29.0315	128.5515	83.7830	212.3345	175.7725	22	-	2	-	-	-	2	20	7
	17	102.9300A	102A	102.9300	36.7014	139.6314	92.0163	231.6477	35.0883	1	-	-	-	-	-	-	1	1
	18	102.9900P	102P	102.9900	38.9877	141.9777	92.0701	234.0478	35.1088	1	-	-	-	-	-	-	1	-
	합 계									1,467	136	133	250	44	122	685	782	107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 × 0.3025 또는 공급면적(m) ÷ 3.3058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만을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환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107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1,467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3층이 판매시설 및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함.)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상지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소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유지분으로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되, 추후 확정측량에 의거 대지면적 변경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획지별로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획지별 주택공급면적이 차이가 있으며,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총 3개 단지로 구성되며, 주택형별 단지 위치, 단지 구분, 단지별 주변여건 등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 중 복수의 단지에 공급하는 주택형(059.9100A, 059.9500B)의 경우 특정단지 선택 청약이 불가한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059.9100A, 059.9500B 주택형 약식표기 59A, 59B의 후단 "1", "2" 부기 표기는 단지 표기이며,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주거공용면적 등의 차이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상이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공급세대수 중 주택형 059.9100A는 59A1(1단지) 199세대, 59A2(2단지) 161세대 등 360세대이며, 주택형 059.9500B는 59B1(1단지) 199세대, 59B2(2단지) 167세대 등 366세대입니다.

※ 주택형 020.8000A, 041.6000A, 059.9600C, 084.9500A, 084.9500B, 084.9200C, 102.9300A, 102.9900P는 2단지이며, 059.9600D, 059.6700E, 059.9500F, 084.9200D, 084.6000E, 084.8400F, 084.7700G, 099.5200A는 3단지입니다.

※ 3-1BL은 1단지(101동~108동)와 2단지(201동~210동)로 구성되어 있고, 3-2BL은 3단지(301동~307동)에 해당합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세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 인·허가 기준에 따른 발코니 변화로 인해, 같은 주택형이라도 발코니 설치 내용 및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세대, 원)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총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15%)	2회(15%)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024.2.20	2024.5.20	2024.8.20	2024.11.20	2025.2.20	2025.5.20	입주예정일
20A	77	204동 3, 4, 5, 6호	1층	2	148,358,225	124,559,775	272,918,000	27,291,800	40,937,700	40,937,700	27,291,800	27,291,800	27,291,800	27,291,800	54,583,600
			3~4층	3	152,389,562	127,944,438	280,334,000	28,033,400	42,050,100	42,050,100	28,033,400	28,033,400	28,033,400	28,033,400	56,066,800
			5~9층	7	156,421,444	131,329,556	287,751,000	28,775,100	43,162,650	43,162,650	28,775,100	28,775,100	28,775,100	28,775,100	57,550,200
			10~19층	16	161,258,940	135,391,060	296,650,000	29,665,000	44,497,500	44,497,500	29,665,000	29,665,000	29,665,000	29,665,000	59,330,000
			20~29층	17	164,484,119	138,098,881	302,583,000	30,258,300	45,387,450	45,387,450	30,258,300	30,258,300	30,258,300	30,258,300	60,516,600
			30~32층	5	167,709,298	140,806,702	308,516,000	30,851,600	46,277,400	46,277,400	30,851,600	30,851,600	30,851,600	30,851,600	61,703,200
		206동 7, 8호 207동 5호	1층	3	146,874,740	123,314,260	270,189,000	27,018,900	40,528,350	40,528,350	27,018,900	27,018,900	27,018,900	27,018,900	54,037,800
			3~4층	2	150,865,852	126,665,148	277,531,000	27,753,100	41,629,650	41,629,650	27,753,100	27,753,100	27,753,100	27,753,100	55,506,200

			5~9층	8	154,856,963	130,016,037	284,873,000	28,487,300	42,730,950	42,730,950	28,487,300	28,487,300	28,487,300	28,487,300	56,974,600			
			10~18층	11	159,646,622	134,037,378	293,684,000	29,368,400	44,052,600	44,052,600	29,368,400	29,368,400	29,368,400	29,368,400	58,736,800			
			20~24층	3	162,839,185	136,717,815	299,557,000	29,955,700	44,933,550	44,933,550	29,955,700	29,955,700	29,955,700	29,955,700	59,911,400			
41A	9	204동 7, 8, 9, 10, 12호 206동 6호	8층	1	300,194,402	252,039,598	552,234,000	55,223,400	82,835,100	82,835,100	55,223,400	55,223,400	55,223,400	55,223,400	110,446,800			
			11~14층	5	307,915,697	258,522,303	566,438,000	56,643,800	84,965,700	84,965,700	56,643,800	56,643,800	56,643,800	56,643,800	56,643,800	113,287,600		
			27층	1	314,074,141	263,692,859	577,767,000	57,776,700	86,665,050	86,665,050	57,776,700	57,776,700	57,776,700	57,776,700	57,776,700	115,553,400		
			33~34층	2	320,232,042	268,862,958	589,095,000	58,909,500	88,364,250	88,364,250	58,909,500	58,909,500	58,909,500	58,909,500	58,909,500	117,819,000		
59A1	199	101동 2, 6호 102동 2호 103동 2호	1층	1	459,638,698	380,344,302	839,983,000	83,998,300	125,997,450	125,997,450	83,998,300	83,998,300	83,998,300	83,998,300	167,996,600			
			2층	4	469,631,117	388,612,883	858,244,000	85,824,400	128,736,600	128,736,600	85,824,400	85,824,400	85,824,400	85,824,400	171,648,800			
			3~4층	6	472,129,085	390,679,915	862,809,000	86,280,900	129,421,350	129,421,350	86,280,900	86,280,900	86,280,900	86,280,900	172,561,800			
			5~9층	18	484,618,925	401,015,075	885,634,000	88,563,400	132,845,100	132,845,100	88,563,400	88,563,400	88,563,400	88,563,400	88,563,400	177,126,800		
			10~19층	37	499,607,280	413,417,720	913,025,000	91,302,500	136,953,750	136,953,750	91,302,500	91,302,500	91,302,500	91,302,500	91,302,500	182,605,000		
			20~29층	5	509,599,699	421,686,301	931,286,000	93,128,600	139,692,900	139,692,900	93,128,600	93,128,600	93,128,600	93,128,600	93,128,600	186,257,200		
		102동 6호 103동 5호 104동 4호 105동 4호 106동 2, 6호 107동 2, 5호	1층	1	452,743,978	374,639,022	827,383,000	82,738,300	124,107,450	124,107,450	82,738,300	82,738,300	82,738,300	82,738,300	82,738,300	165,476,600		
			2층	6	462,586,464	382,783,536	845,370,000	84,537,000	126,805,500	126,805,500	84,537,000	84,537,000	84,537,000	84,537,000	84,537,000	169,074,000		
			3~4층	10	465,047,222	384,819,778	849,867,000	84,986,700	127,480,050	127,480,050	84,986,700	84,986,700	84,986,700	84,986,700	84,986,700	169,973,400		
			5~9층	35	477,349,920	395,000,080	872,350,000	87,235,000	130,852,500	130,852,500	87,235,000	87,235,000	87,235,000	87,235,000	87,235,000	174,470,000		
			10~18층	65	492,113,376	407,216,624	899,330,000	89,933,000	134,899,500	134,899,500	89,933,000	89,933,000	89,933,000	89,933,000	89,933,000	179,866,000		
			20~29층	11	501,955,315	415,360,685	917,316,000	91,731,600	137,597,400	137,597,400	91,731,600	91,731,600	91,731,600	91,731,600	91,731,600	183,463,200		
			59A2	161	201동 2호	2층	1	459,746,438	385,997,562	845,744,000	84,574,400	126,861,600	126,861,600	84,574,400	84,574,400	84,574,400	84,574,400	169,148,800
						3~4층	2	462,191,551	388,050,449	850,242,000	85,024,200	127,536,300	127,536,300	85,024,200	85,024,200	85,024,200	85,024,200	170,048,400
5~7층	2	474,419,290				398,316,710	872,736,000	87,273,600	130,910,400	130,910,400	87,273,600	87,273,600	87,273,600	87,273,600	174,547,200			
10~19층	9	489,091,597				410,635,403	899,727,000	89,972,700	134,959,050	134,959,050	89,972,700	89,972,700	89,972,700	89,972,700	89,972,700	179,945,400		
21~29층	7	498,873,679				418,848,321	917,722,000	91,772,200	137,658,300	137,658,300	91,772,200	91,772,200	91,772,200	91,772,200	91,772,200	183,544,400		
201동 6호	30~33층	3			508,655,761	427,061,239	935,717,000	93,571,700	140,357,550	140,357,550	93,571,700	93,571,700	93,571,700	93,571,700	93,571,700	187,143,400		
	2층	1			455,148,670	382,137,330	837,286,000	83,728,600	125,592,900	125,592,900	83,728,600	83,728,600	83,728,600	83,728,600	83,728,600	167,457,200		
	3~4층	2			457,569,864	384,170,136	841,740,000	84,174,000	126,261,000	126,261,000	84,174,000	84,174,000	84,174,000	84,174,000	84,174,000	168,348,000		
	6~9층	4			469,674,749	394,333,251	864,008,000	86,400,800	129,601,200	129,601,200	86,400,800	86,400,800	86,400,800	86,400,800	86,400,800	172,801,600		
	10~19층	10			484,200,828	406,529,172	890,730,000	89,073,000	133,609,500	133,609,500	89,073,000	89,073,000	89,073,000	89,073,000	89,073,000	178,146,000		
	20~29층	10			493,885,062	414,659,938	908,545,000	90,854,500	136,281,750	136,281,750	90,854,500	90,854,500	90,854,500	90,854,500	90,854,500	181,709,000		
202동 5호 203동 2호 210동 4호	30~32층	3			503,568,752	422,790,248	926,359,000	92,635,900	138,953,850	138,953,850	92,635,900	92,635,900	92,635,900	92,635,900	92,635,900	185,271,800		
	2층	3			452,850,329	380,207,671	833,058,000	83,305,800	124,958,700	124,958,700	83,305,800	83,305,800	83,305,800	83,305,800	83,305,800	166,611,600		
	3~4층	5			455,259,020	382,229,980	837,489,000	83,748,900	125,623,350	125,623,350	83,748,900	83,748,900	83,748,900	83,748,900	83,748,900	167,497,800		
	5~9층	13	467,303,022	392,341,978	859,645,000	85,964,500	128,946,750	128,946,750	85,964,500	85,964,500	85,964,500	85,964,500	85,964,500	171,929,000				
	10~19층	28	481,755,172	404,475,828	886,231,000	88,623,100	132,934,650	132,934,650	88,623,100	88,623,100	88,623,100	88,623,100	88,623,100	177,246,200				
	20~29층	27	491,390,482	412,565,518	903,956,000	90,395,600	135,593,400	135,593,400	90,395,600	90,395,600	90,395,600	90,395,600	90,395,600	180,791,200				
	30~34층	10	501,025,792	420,655,208	921,681,000	92,168,100	138,252,150	138,252,150	92,168,100	92,168,100	92,168,100	92,168,100	92,168,100	184,336,200				
203동 5호	2층	1	450,551,444	378,277,556	828,829,000	82,882,900	124,324,350	124,324,350	82,882,900	82,882,900	82,882,900	82,882,900	82,882,900	165,765,800				
	3~4층	2	452,948,177	380,289,823	833,238,000	83,323,800	124,985,700	124,985,700	83,323,800	83,323,800	83,323,800	83,323,800	83,323,800	166,647,600				
	5~9층	3	464,930,752	390,350,248	855,281,000	85,528,100	128,292,150	128,292,150	85,528,100	85,528,100	85,528,100	85,528,100	85,528,100	171,056,200				
	11~18층	8	479,310,059	402,422,941	881,733,000	88,173,300	132,259,950	132,259,950	88,173,300	88,173,300	88,173,300	88,173,300	88,173,300	176,346,600				
	20~27층	7	488,896,445	410,471,555	899,368,000	89,936,800	134,905,200	134,905,200	89,936,800	89,936,800	89,936,800	89,936,800	89,936,800	179,873,600				

59B1	199	101동 1, 7호 102동 1호 103동 1호	2층	2	471,784,349	390,394,651	862,179,000	86,217,900	129,326,850	129,326,850	86,217,900	86,217,900	86,217,900	86,217,900	172,435,800	
			3~4층	4	474,293,808	392,471,192	866,765,000	86,676,500	130,014,750	130,014,750	86,676,500	86,676,500	86,676,500	86,676,500	86,676,500	173,353,000
			5~9층	20	486,841,104	402,853,896	889,695,000	88,969,500	133,454,250	133,454,250	88,969,500	88,969,500	88,969,500	88,969,500	88,969,500	177,939,000
			10~19층	36	501,898,406	415,313,594	917,212,000	91,721,200	137,581,800	137,581,800	91,721,200	91,721,200	91,721,200	91,721,200	91,721,200	183,442,400
			20층	4	511,936,243	423,619,757	935,556,000	93,555,600	140,333,400	140,333,400	93,555,600	93,555,600	93,555,600	93,555,600	93,555,600	187,111,200
		102동 7호 103동 6호 104동 5호 105동 5호 106동 1, 7호 107동 1, 6호	2층	5	464,707,411	384,538,589	849,246,000	84,924,600	127,386,900	127,386,900	84,924,600	84,924,600	84,924,600	84,924,600	84,924,600	169,849,200
			3~4층	13	467,179,661	386,584,339	853,764,000	85,376,400	128,064,600	128,064,600	85,376,400	85,376,400	85,376,400	85,376,400	85,376,400	170,752,800
			5~9층	33	479,538,720	396,811,280	876,350,000	87,635,000	131,452,500	131,452,500	87,635,000	87,635,000	87,635,000	87,635,000	87,635,000	175,270,000
			10~19층	71	494,370,029	409,083,971	903,454,000	90,345,400	135,518,100	135,518,100	90,345,400	90,345,400	90,345,400	90,345,400	90,345,400	180,690,800
			20~21층	11	504,257,386	417,265,614	921,523,000	92,152,300	138,228,450	138,228,450	92,152,300	92,152,300	92,152,300	92,152,300	92,152,300	184,304,600
59B2	167	201동 1호	2층	1	466,214,191	391,427,809	857,642,000	85,764,200	128,646,300	128,646,300	85,764,200	85,764,200	85,764,200	85,764,200	171,528,400	
			3~4층	2	468,694,094	393,509,906	862,204,000	86,220,400	129,330,600	129,330,600	86,220,400	86,220,400	86,220,400	86,220,400	86,220,400	172,440,800
			5~9층	5	481,093,067	403,919,933	885,013,000	88,501,300	132,751,950	132,751,950	88,501,300	88,501,300	88,501,300	88,501,300	88,501,300	177,002,600
			10~18층	8	495,972,486	416,412,514	912,385,000	91,238,500	136,857,750	136,857,750	91,238,500	91,238,500	91,238,500	91,238,500	91,238,500	182,477,000
			20~29층	10	505,892,099	424,740,901	930,633,000	93,063,300	139,594,950	139,594,950	93,063,300	93,063,300	93,063,300	93,063,300	93,063,300	186,126,600
			30~33층	4	515,811,168	433,068,832	948,880,000	94,888,000	142,332,000	142,332,000	94,888,000	94,888,000	94,888,000	94,888,000	94,888,000	189,776,000
		201동 7호	2층	1	461,552,278	387,513,722	849,066,000	84,906,600	127,359,900	127,359,900	84,906,600	84,906,600	84,906,600	84,906,600	84,906,600	169,813,200
			3~4층	2	464,007,175	389,574,825	853,582,000	85,358,200	128,037,300	128,037,300	85,358,200	85,358,200	85,358,200	85,358,200	85,358,200	170,716,400
			5~8층	4	476,282,207	399,880,793	876,163,000	87,616,300	131,424,450	131,424,450	87,616,300	87,616,300	87,616,300	87,616,300	87,616,300	175,232,600
			10~19층	10	491,012,680	412,248,320	903,261,000	90,326,100	135,489,150	135,489,150	90,326,100	90,326,100	90,326,100	90,326,100	90,326,100	180,652,200
			20~29층	10	500,832,814	420,493,186	921,326,000	92,132,600	138,198,900	138,198,900	92,132,600	92,132,600	92,132,600	92,132,600	92,132,600	184,265,200
			30~31층	2	510,653,491	428,738,509	939,392,000	93,939,200	140,908,800	140,908,800	93,939,200	93,939,200	93,939,200	93,939,200	93,939,200	187,878,400
		202동 6호 203동 1호 210동 5호	2층	3	459,220,777	385,556,223	844,777,000	84,477,700	126,716,550	126,716,550	84,477,700	84,477,700	84,477,700	84,477,700	84,477,700	168,955,400
			3~4층	4	461,663,716	387,607,284	849,271,000	84,927,100	127,390,650	127,390,650	84,927,100	84,927,100	84,927,100	84,927,100	84,927,100	169,854,200
			5~9층	13	473,876,777	397,861,223	871,738,000	87,173,800	130,760,700	130,760,700	87,173,800	87,173,800	87,173,800	87,173,800	87,173,800	174,347,600
			10~19층	29	488,532,776	410,166,224	898,699,000	89,869,900	134,804,850	134,804,850	89,869,900	89,869,900	89,869,900	89,869,900	89,869,900	179,739,800
			20~29층	28	498,303,443	418,369,557	916,673,000	91,667,300	137,500,950	137,500,950	91,667,300	91,667,300	91,667,300	91,667,300	91,667,300	183,334,600
			30~32층	6	508,074,109	426,572,891	934,647,000	93,464,700	140,197,050	140,197,050	93,464,700	93,464,700	93,464,700	93,464,700	93,464,700	186,929,400
		203동 6호	2층	1	456,889,820	383,599,180	840,489,000	84,048,900	126,073,350	126,073,350	84,048,900	84,048,900	84,048,900	84,048,900	84,048,900	168,097,800
			3~4층	2	459,320,256	385,639,744	844,960,000	84,496,000	126,744,000	126,744,000	84,496,000	84,496,000	84,496,000	84,496,000	84,496,000	168,992,000
5~9층	5		471,471,347	395,841,653	867,313,000	86,731,300	130,096,950	130,096,950	86,731,300	86,731,300	86,731,300	86,731,300	86,731,300	173,462,600		
10~19층	9		486,052,873	408,084,127	894,137,000	89,413,700	134,120,550	134,120,550	89,413,700	89,413,700	89,413,700	89,413,700	89,413,700	178,827,400		
20~27층	8		495,774,072	416,245,928	912,020,000	91,202,000	136,803,000	136,803,000	91,202,000	91,202,000	91,202,000	91,202,000	91,202,000	182,404,000		
59C	241	205동 1, 2, 3, 4호 209동 5, 6호	2층	4	455,161,716	382,148,284	837,310,000	83,731,000	125,596,500	125,596,500	83,731,000	83,731,000	83,731,000	83,731,000	167,462,000	
			3~4층	12	457,582,910	384,181,090	841,764,000	84,176,400	126,264,600	126,264,600	84,176,400	84,176,400	84,176,400	84,176,400	84,176,400	168,352,800
			5~9층	26	469,688,339	394,344,661	864,033,000	86,403,300	129,604,950	129,604,950	86,403,300	86,403,300	86,403,300	86,403,300	86,403,300	172,806,600
			10~19층	51	484,214,962	406,541,038	890,756,000	89,075,600	133,613,400	133,613,400	89,075,600	89,075,600	89,075,600	89,075,600	89,075,600	178,151,200
			20~29층	34	493,899,196	414,671,804	908,571,000	90,857,100	136,285,650	136,285,650	90,857,100	90,857,100	90,857,100	90,857,100	90,857,100	181,714,200
			30~34층	10	503,583,430	422,802,570	926,386,000	92,638,600	138,957,900	138,957,900	92,638,600	92,638,600	92,638,600	92,638,600	92,638,600	185,277,200
		206동 1호	1층	1	452,261,610	379,713,390	831,975,000	83,197,500	124,796,250	124,796,250	83,197,500	83,197,500	83,197,500	83,197,500	166,395,000	

			2층	1	462,093,160	387,967,840	850,061,000	85,006,100	127,509,150	127,509,150	85,006,100	85,006,100	85,006,100	85,006,100	170,012,200
			3~4층	2	464,551,319	390,031,681	854,583,000	85,458,300	128,187,450	128,187,450	85,458,300	85,458,300	85,458,300	85,458,300	170,916,600
			5~9층	4	476,841,028	400,349,972	877,191,000	87,719,100	131,578,650	131,578,650	87,719,100	87,719,100	87,719,100	87,719,100	175,438,200
			10~19층	6	491,588,352	412,731,648	904,320,000	90,432,000	135,648,000	135,648,000	90,432,000	90,432,000	90,432,000	90,432,000	180,864,000
			20~26층	7	501,420,445	420,986,555	922,407,000	92,240,700	138,361,050	138,361,050	92,240,700	92,240,700	92,240,700	92,240,700	184,481,400
		206동 2호	3~4층	2	464,551,319	390,031,681	854,583,000	85,458,300	128,187,450	128,187,450	85,458,300	85,458,300	85,458,300	85,458,300	170,916,600
			5~9층	4	476,841,028	400,349,972	877,191,000	87,719,100	131,578,650	131,578,650	87,719,100	87,719,100	87,719,100	87,719,100	175,438,200
			10~19층	9	491,588,352	412,731,648	904,320,000	90,432,000	135,648,000	135,648,000	90,432,000	90,432,000	90,432,000	90,432,000	180,864,000
			20~29층	8	501,420,445	420,986,555	922,407,000	92,240,700	138,361,050	138,361,050	92,240,700	92,240,700	92,240,700	92,240,700	184,481,400
		209동 1, 2호	2층	2	457,472,560	384,088,440	841,561,000	84,156,100	126,234,150	126,234,150	84,156,100	84,156,100	84,156,100	84,156,100	168,312,200
			3~4층	3	459,905,713	386,131,287	846,037,000	84,603,700	126,905,550	126,905,550	84,603,700	84,603,700	84,603,700	84,603,700	169,207,400
			5~9층	10	472,072,568	396,346,432	868,419,000	86,841,900	130,262,850	130,262,850	86,841,900	86,841,900	86,841,900	86,841,900	173,683,800
			10~19층	16	486,672,577	408,604,423	895,277,000	89,527,700	134,291,550	134,291,550	89,527,700	89,527,700	89,527,700	89,527,700	179,055,400
			20~29층	17	496,406,279	416,776,721	913,183,000	91,318,300	136,977,450	136,977,450	91,318,300	91,318,300	91,318,300	91,318,300	182,636,600
			30~34층	9	506,139,437	424,948,563	931,088,000	93,108,800	139,663,200	139,663,200	93,108,800	93,108,800	93,108,800	93,108,800	186,217,600
			35층	2	508,573,134	426,991,866	935,565,000	93,556,500	140,334,750	140,334,750	93,556,500	93,556,500	93,556,500	93,556,500	187,113,000
			36층	1	511,006,288	429,034,712	940,041,000	94,004,100	141,006,150	141,006,150	94,004,100	94,004,100	94,004,100	94,004,100	188,008,200
59D	3	301동 3호	1층	1	657,453,835	316,696,165	974,150,000	97,415,000	146,122,500	146,122,500	97,415,000	97,415,000	97,415,000	97,415,000	194,830,000
			2층	1	671,746,192	323,580,808	995,327,000	99,532,700	149,299,050	149,299,050	99,532,700	99,532,700	99,532,700	99,532,700	199,065,400
			3층	1	675,319,788	325,302,212	1,000,622,000	100,062,200	150,093,300	150,093,300	100,062,200	100,062,200	100,062,200	100,062,200	200,124,400
59E	30	301동 1, 2호 306동 5호	1층	3	654,825,774	315,430,226	970,256,000	97,025,600	145,538,400	145,538,400	97,025,600	97,025,600	97,025,600	97,025,600	194,051,200
			2층	3	669,061,440	322,287,560	991,349,000	99,134,900	148,702,350	148,702,350	99,134,900	99,134,900	99,134,900	99,134,900	198,269,800
			3~4층	4	672,620,188	324,001,812	996,622,000	99,662,200	149,493,300	149,493,300	99,662,200	99,662,200	99,662,200	99,662,200	199,324,400
		301동 5, 6호 302동 6, 7호	1층	3	648,277,895	312,276,105	960,554,000	96,055,400	144,083,100	144,083,100	96,055,400	96,055,400	96,055,400	96,055,400	192,110,800
			2층	4	662,370,481	319,064,519	981,435,000	98,143,500	147,215,250	147,215,250	98,143,500	98,143,500	98,143,500	98,143,500	196,287,000
			3~4층	5	665,894,134	320,761,866	986,656,000	98,665,600	147,998,400	147,998,400	98,665,600	98,665,600	98,665,600	98,665,600	197,331,200
		303동 6, 7호	1층	2	641,729,340	309,121,660	950,851,000	95,085,100	142,627,650	142,627,650	95,085,100	95,085,100	95,085,100	95,085,100	190,170,200
			2층	2	655,680,198	315,841,802	971,522,000	97,152,200	145,728,300	145,728,300	97,152,200	97,152,200	97,152,200	97,152,200	194,304,400
			3~4층	4	659,167,406	317,521,594	976,689,000	97,668,900	146,503,350	146,503,350	97,668,900	97,668,900	97,668,900	97,668,900	195,337,800
59F	12	301동 4호	1층	1	662,912,426	319,325,574	982,238,000	98,223,800	147,335,700	147,335,700	98,223,800	98,223,800	98,223,800	98,223,800	196,447,600
			2층	1	677,323,566	326,267,434	1,003,591,000	100,359,100	150,538,650	150,538,650	100,359,100	100,359,100	100,359,100	100,359,100	200,718,200
			3~4층	2	680,926,182	328,002,818	1,008,929,000	100,892,900	151,339,350	151,339,350	100,892,900	100,892,900	100,892,900	100,892,900	201,785,800
		302동 4호	1층	1	659,597,992	317,729,008	977,327,000	97,732,700	146,599,050	146,599,050	97,732,700	97,732,700	97,732,700	97,732,700	195,465,400
			2층	1	673,936,918	324,636,082	998,573,000	99,857,300	149,785,950	149,785,950	99,857,300	99,857,300	99,857,300	99,857,300	199,714,600
			3~4층	2	677,521,986	326,363,014	1,003,885,000	100,388,500	150,582,750	150,582,750	100,388,500	100,388,500	100,388,500	100,388,500	200,777,000
		303동 4호	1층	1	649,654,016	312,938,984	962,593,000	96,259,300	144,388,950	144,388,950	96,259,300	96,259,300	96,259,300	96,259,300	192,518,600
			2층	1	663,776,973	319,742,027	983,519,000	98,351,900	147,527,850	147,527,850	98,351,900	98,351,900	98,351,900	98,351,900	196,703,800
			3~4층	2	667,308,050	321,442,950	988,751,000	98,875,100	148,312,650	148,312,650	98,875,100	98,875,100	98,875,100	98,875,100	197,750,200

84A	146	201동 3호 202동 2호	2층	2	616,245,617	517,392,383	1,133,638,000	113,363,800	170,045,700	170,045,700	113,363,800	113,363,800	113,363,800	113,363,800	226,727,600		
			3층	2	610,367,670	512,457,330	1,122,825,000	112,282,500	168,423,750	168,423,750	112,282,500	112,282,500	112,282,500	112,282,500	112,282,500	224,565,000	
			4층	2	619,523,525	520,144,475	1,139,668,000	113,966,800	170,950,200	170,950,200	113,966,800	113,966,800	113,966,800	113,966,800	113,966,800	227,933,600	
			5, 7, 9층	6	626,515,308	526,014,692	1,152,530,000	115,253,000	172,879,500	172,879,500	115,253,000	115,253,000	115,253,000	115,253,000	115,253,000	230,506,000	
			6, 8층	4	635,913,065	533,904,935	1,169,818,000	116,981,800	175,472,700	175,472,700	116,981,800	116,981,800	116,981,800	116,981,800	116,981,800	233,963,600	
			10, 12, 14, 16층	8	655,580,513	550,417,487	1,205,998,000	120,599,800	180,899,700	180,899,700	120,599,800	120,599,800	120,599,800	120,599,800	120,599,800	241,199,600	
			11, 13, 15, 17층	8	645,891,930	542,283,070	1,188,175,000	118,817,500	178,226,250	178,226,250	118,817,500	118,817,500	118,817,500	118,817,500	118,817,500	237,635,000	
		201동 5호 210동 1호	2층	2	610,082,824	512,218,176	1,122,301,000	112,230,100	168,345,150	168,345,150	112,230,100	112,230,100	112,230,100	112,230,100	112,230,100	224,460,200	
			3층	2	604,264,129	507,332,871	1,111,597,000	111,159,700	166,739,550	166,739,550	111,159,700	111,159,700	111,159,700	111,159,700	111,159,700	222,319,400	
			4층	2	613,328,116	514,942,884	1,128,271,000	112,827,100	169,240,650	169,240,650	112,827,100	112,827,100	112,827,100	112,827,100	112,827,100	225,654,200	
			5, 7, 9층	6	620,249,774	520,754,226	1,141,004,000	114,100,400	171,150,600	171,150,600	114,100,400	114,100,400	114,100,400	114,100,400	114,100,400	228,200,800	
			6, 8층	4	629,553,488	528,565,512	1,158,119,000	115,811,900	173,717,850	173,717,850	115,811,900	115,811,900	115,811,900	115,811,900	115,811,900	231,623,800	
			10, 12, 14, 16층	8	649,024,697	544,913,303	1,193,938,000	119,393,800	179,090,700	179,090,700	119,393,800	119,393,800	119,393,800	119,393,800	119,393,800	238,787,600	
		11, 13, 15, 17층	8	639,432,875	536,860,125	1,176,293,000	117,629,300	176,443,950	176,443,950	117,629,300	117,629,300	117,629,300	117,629,300	117,629,300	235,258,600		
		202동 4호 209동 4호	2층	2	607,001,699	509,631,301	1,116,633,000	111,663,300	167,494,950	167,494,950	111,663,300	111,663,300	111,663,300	111,663,300	111,663,300	223,326,600	
			3층	2	601,212,359	504,770,641	1,105,983,000	110,598,300	165,897,450	165,897,450	110,598,300	110,598,300	110,598,300	110,598,300	110,598,300	221,196,600	
			4층	2	610,230,683	512,342,317	1,122,573,000	112,257,300	168,385,950	168,385,950	112,257,300	112,257,300	112,257,300	112,257,300	112,257,300	224,514,600	
			5, 7, 9층	6	617,117,551	518,124,449	1,135,242,000	113,524,200	170,286,300	170,286,300	113,524,200	113,524,200	113,524,200	113,524,200	113,524,200	227,048,400	
			6, 8층	4	626,373,972	525,896,028	1,152,270,000	115,227,000	172,840,500	172,840,500	115,227,000	115,227,000	115,227,000	115,227,000	115,227,000	230,454,000	
			10, 12, 14, 16층	8	645,746,789	542,161,211	1,187,908,000	118,790,800	178,186,200	178,186,200	118,790,800	118,790,800	118,790,800	118,790,800	118,790,800	237,581,600	
			11, 13, 15, 17층	8	636,203,347	534,148,653	1,170,352,000	117,035,200	175,552,800	175,552,800	117,035,200	117,035,200	117,035,200	117,035,200	117,035,200	234,070,400	
		203동 4호 208동 4호	2층	2	603,920,574	507,044,426	1,110,965,000	111,096,500	166,644,750	166,644,750	111,096,500	111,096,500	111,096,500	111,096,500	111,096,500	222,193,000	
			3층	2	598,160,588	502,208,412	1,100,369,000	110,036,900	165,055,350	165,055,350	110,036,900	110,036,900	110,036,900	110,036,900	110,036,900	220,073,800	
			4층	2	607,132,706	509,741,294	1,116,874,000	111,687,400	167,531,100	167,531,100	111,687,400	111,687,400	111,687,400	111,687,400	111,687,400	223,374,800	
			5, 7, 9층	6	613,984,784	515,494,216	1,129,479,000	112,947,900	169,421,850	169,421,850	112,947,900	112,947,900	112,947,900	112,947,900	112,947,900	225,895,800	
			6, 8층	4	623,194,456	523,226,544	1,146,421,000	114,642,100	171,963,150	171,963,150	114,642,100	114,642,100	114,642,100	114,642,100	114,642,100	229,284,200	
			10, 12, 14, 16, 18층	9	642,468,881	539,409,119	1,181,878,000	118,187,800	177,281,700	177,281,700	118,187,800	118,187,800	118,187,800	118,187,800	118,187,800	236,375,600	
		11, 13, 15, 17층	8	632,973,820	531,437,180	1,164,411,000	116,441,100	174,661,650	174,661,650	116,441,100	116,441,100	116,441,100	116,441,100	116,441,100	232,882,200		
		208동 1호	2층	1	598,031,212	502,099,788	1,100,131,000	110,013,100	165,019,650	165,019,650	110,013,100	110,013,100	110,013,100	110,013,100	110,013,100	220,026,200	
			3층	1	610,230,683	512,342,317	1,122,573,000	112,257,300	168,385,950	168,385,950	112,257,300	112,257,300	112,257,300	112,257,300	112,257,300	224,514,600	
			4층	1	601,212,359	504,770,641	1,105,983,000	110,598,300	165,897,450	165,897,450	110,598,300	110,598,300	110,598,300	110,598,300	110,598,300	221,196,600	
			5, 7, 9층	3	626,373,972	525,896,028	1,152,270,000	115,227,000	172,840,500	172,840,500	115,227,000	115,227,000	115,227,000	115,227,000	115,227,000	230,454,000	
			6, 8층	2	617,117,551	518,124,449	1,135,242,000	113,524,200	170,286,300	170,286,300	113,524,200	113,524,200	113,524,200	113,524,200	113,524,200	227,048,400	
			10, 12, 14, 16, 18층	5	636,203,347	534,148,653	1,170,352,000	117,035,200	175,552,800	175,552,800	117,035,200	117,035,200	117,035,200	117,035,200	117,035,200	234,070,400	
			11, 13, 15, 17층	4	645,746,789	542,161,211	1,187,908,000	118,790,800	178,186,200	178,186,200	118,790,800	118,790,800	118,790,800	118,790,800	118,790,800	237,581,600	
		84B	49	201동 4호	2층	1	608,169,352	510,611,648	1,118,781,000	111,878,100	167,817,150	167,817,150	111,878,100	111,878,100	111,878,100	111,878,100	223,756,200
					3층	1	620,575,391	521,027,609	1,141,603,000	114,160,300	171,240,450	171,240,450	114,160,300	114,160,300	114,160,300	114,160,300	228,320,600
					4층	1	611,404,315	513,327,685	1,124,732,000	112,473,200	168,709,800	168,709,800	112,473,200	112,473,200	112,473,200	112,473,200	224,946,400

		203동 3호	5, 7, 9층	3	636,992,654	534,811,346	1,171,804,000	117,180,400	175,770,600	175,770,600	117,180,400	117,180,400	117,180,400	117,180,400	234,360,800			
			6, 8층	2	627,579,133	526,907,867	1,154,487,000	115,448,700	173,173,050	173,173,050	115,448,700	115,448,700	115,448,700	115,448,700	115,448,700	230,897,400		
			10, 12, 14, 16층	4	646,988,371	543,203,629	1,190,192,000	119,019,200	178,528,800	178,528,800	119,019,200	119,019,200	119,019,200	119,019,200	119,019,200	238,038,400		
			11, 13, 15, 17층	4	656,693,262	551,351,738	1,208,045,000	120,804,500	181,206,750	181,206,750	120,804,500	120,804,500	120,804,500	120,804,500	120,804,500	241,609,000		
			2층	1	599,046,656	502,952,344	1,101,999,000	110,199,900	165,299,850	165,299,850	110,199,900	110,199,900	110,199,900	110,199,900	110,199,900	220,399,800		
			3층	1	611,266,784	513,212,216	1,124,479,000	112,447,900	168,671,850	168,671,850	112,447,900	112,447,900	112,447,900	112,447,900	112,447,900	224,895,800		
			4층	1	602,233,240	505,627,760	1,107,861,000	110,786,100	166,179,150	166,179,150	110,786,100	110,786,100	110,786,100	110,786,100	110,786,100	221,572,200		
			5, 7, 9층	3	627,437,797	526,789,203	1,154,227,000	115,422,700	173,134,050	173,134,050	115,422,700	115,422,700	115,422,700	115,422,700	115,422,700	230,845,400		
			6, 8층	2	618,165,068	519,003,932	1,137,169,000	113,716,900	170,575,350	170,575,350	113,716,900	113,716,900	113,716,900	113,716,900	113,716,900	227,433,800		
			10, 12, 14, 16, 18층	5	637,283,480	535,055,520	1,172,339,000	117,233,900	175,850,850	175,850,850	117,233,900	117,233,900	117,233,900	117,233,900	117,233,900	234,467,800		
			11, 13, 15, 17층	4	646,843,230	543,081,770	1,189,925,000	118,992,500	178,488,750	178,488,750	118,992,500	118,992,500	118,992,500	118,992,500	118,992,500	237,985,000		
			209동 3호	2층	1	602,087,555	505,505,445	1,107,593,000	110,759,300	166,138,950	166,138,950	110,759,300	110,759,300	110,759,300	110,759,300	110,759,300	221,518,600	
		3층		1	614,369,653	515,817,347	1,130,187,000	113,018,700	169,528,050	169,528,050	113,018,700	113,018,700	113,018,700	113,018,700	113,018,700	226,037,400		
		4층		1	605,289,902	508,194,098	1,113,484,000	111,348,400	167,022,600	167,022,600	111,348,400	111,348,400	111,348,400	111,348,400	111,348,400	222,696,800		
		5, 7, 9층		3	630,622,750	529,463,250	1,160,086,000	116,008,600	174,012,900	174,012,900	116,008,600	116,008,600	116,008,600	116,008,600	116,008,600	232,017,200		
		6, 8층		2	621,303,271	521,638,729	1,142,942,000	114,294,200	171,441,300	171,441,300	114,294,200	114,294,200	114,294,200	114,294,200	114,294,200	228,588,400		
		10, 12, 14, 16층		4	640,518,444	537,771,556	1,178,290,000	117,829,000	176,743,500	176,743,500	117,829,000	117,829,000	117,829,000	117,829,000	117,829,000	235,658,000		
		11, 13, 15, 17층		4	650,126,574	545,838,426	1,195,965,000	119,596,500	179,394,750	179,394,750	119,596,500	119,596,500	119,596,500	119,596,500	119,596,500	239,193,000		
		84C	83	202동 1, 3호	2층	2	610,585,110	512,639,890	1,123,225,000	112,322,500	168,483,750	168,483,750	112,322,500	112,322,500	112,322,500	112,322,500	224,645,000	
					3층	2	623,040,617	523,097,383	1,146,138,000	114,613,800	171,920,700	171,920,700	114,613,800	114,613,800	114,613,800	114,613,800	229,227,600	
					4층	2	613,833,120	515,366,880	1,129,200,000	112,920,000	169,380,000	169,380,000	112,920,000	112,920,000	112,920,000	112,920,000	225,840,000	
					5, 7, 9층	6	639,523,112	536,935,888	1,176,459,000	117,645,900	176,468,850	176,468,850	117,645,900	117,645,900	117,645,900	117,645,900	117,645,900	235,291,800
					6, 8층	4	630,072,083	529,000,917	1,159,073,000	115,907,300	173,860,950	173,860,950	115,907,300	115,907,300	115,907,300	115,907,300	115,907,300	231,814,600
					10, 12, 14, 16층	8	649,559,056	545,361,944	1,194,921,000	119,492,100	179,238,150	179,238,150	119,492,100	119,492,100	119,492,100	119,492,100	119,492,100	238,984,200
					11, 13, 15, 17층	8	659,301,998	553,542,002	1,212,844,000	121,284,400	181,926,600	181,926,600	121,284,400	121,284,400	121,284,400	121,284,400	121,284,400	242,568,800
				208동 2호	2층	1	610,448,123	512,524,877	1,122,973,000	112,297,300	168,445,950	168,445,950	112,297,300	112,297,300	112,297,300	112,297,300	112,297,300	224,594,600
					3층	1	604,625,623	507,636,377	1,112,262,000	111,226,200	166,839,300	166,839,300	111,226,200	111,226,200	111,226,200	111,226,200	111,226,200	222,452,400
					4층	1	613,695,046	515,250,954	1,128,946,000	112,894,600	169,341,900	169,341,900	112,894,600	112,894,600	112,894,600	112,894,600	112,894,600	225,789,200
5, 7, 9층	3				620,621,053	521,065,947	1,141,687,000	114,168,700	171,253,050	171,253,050	114,168,700	114,168,700	114,168,700	114,168,700	114,168,700	228,337,400		
6, 8층	2				629,930,203	528,881,797	1,158,812,000	115,881,200	173,821,800	173,821,800	115,881,200	115,881,200	115,881,200	115,881,200	115,881,200	231,762,400		
10, 12, 14, 16, 18층	5				649,412,827	545,239,173	1,194,652,000	119,465,200	179,197,800	179,197,800	119,465,200	119,465,200	119,465,200	119,465,200	119,465,200	238,930,400		
11, 13, 15, 17층	4				639,815,569	537,181,431	1,176,997,000	117,699,700	176,549,550	176,549,550	117,699,700	117,699,700	117,699,700	117,699,700	117,699,700	235,399,400		
208동 5호	2층	1	607,349,059	509,922,941	1,117,272,000	111,727,200	167,590,800	167,590,800	111,727,200	111,727,200	111,727,200	111,727,200	111,727,200	223,454,400				
	3층	1	601,556,458	505,059,542	1,106,616,000	110,661,600	165,992,400	165,992,400	110,661,600	110,661,600	110,661,600	110,661,600	110,661,600	221,323,200				
	4층	1	610,579,674	512,635,326	1,123,215,000	112,321,500	168,482,250	168,482,250	112,321,500	112,321,500	112,321,500	112,321,500	112,321,500	224,643,000				
	5, 7, 9층	3	617,470,348	518,420,652	1,135,891,000	113,589,100	170,383,650	170,383,650	113,589,100	113,589,100	113,589,100	113,589,100	113,589,100	227,178,200				
	6, 8층	2	626,732,748	526,197,252	1,152,930,000	115,293,000	172,939,500	172,939,500	115,293,000	115,293,000	115,293,000	115,293,000	115,293,000	230,586,000				
	10, 12, 14, 16, 18층	5	646,115,893	542,471,107	1,188,587,000	118,858,700	178,288,050	178,288,050	118,858,700	118,858,700	118,858,700	118,858,700	118,858,700	237,717,400				
	11, 13, 15, 17층	4	636,567,559	534,454,441	1,171,022,000	117,102,200	175,653,300	175,653,300	117,102,200	117,102,200	117,102,200	117,102,200	117,102,200	234,204,400				

		210동 2호	2층	1	604,479,395	507,513,605	1,111,993,000	111,199,300	166,798,950	166,798,950	111,199,300	111,199,300	111,199,300	111,199,300	222,398,600		
			3층	1	616,810,417	517,866,583	1,134,677,000	113,467,700	170,201,550	170,201,550	113,467,700	113,467,700	113,467,700	113,467,700	113,467,700	226,935,400	
			4층	1	607,694,789	510,213,211	1,117,908,000	111,790,800	167,686,200	167,686,200	111,790,800	111,790,800	111,790,800	111,790,800	111,790,800	223,581,600	
			5, 7, 9층	3	633,127,658	531,566,342	1,164,694,000	116,469,400	174,704,100	174,704,100	116,469,400	116,469,400	116,469,400	116,469,400	116,469,400	232,938,800	
			6, 8층	2	623,771,215	523,710,785	1,147,482,000	114,748,200	172,122,300	172,122,300	114,748,200	114,748,200	114,748,200	114,748,200	114,748,200	229,496,400	
			10, 12, 14, 16, 18층	5	643,063,036	539,907,964	1,182,971,000	118,297,100	177,445,650	177,445,650	118,297,100	118,297,100	118,297,100	118,297,100	118,297,100	118,297,100	236,594,200
			11, 13, 15, 17층	4	652,709,218	548,006,782	1,200,716,000	120,071,600	180,107,400	180,107,400	120,071,600	120,071,600	120,071,600	120,071,600	120,071,600	120,071,600	240,143,200
84D	36	302동 1, 2호 304동 1,2,3,4,5,6호	1층	8	855,666,566	412,175,434	1,267,842,000	126,784,200	190,176,300	190,176,300	126,784,200	126,784,200	126,784,200	126,784,200	253,568,400		
			2층	8	874,268,160	421,135,840	1,295,404,000	129,540,400	194,310,600	194,310,600	129,540,400	129,540,400	129,540,400	129,540,400	129,540,400	259,080,800	
			3~4층	14	878,918,895	423,376,105	1,302,295,000	130,229,500	195,344,250	195,344,250	130,229,500	130,229,500	130,229,500	130,229,500	130,229,500	260,459,000	
		303동 1, 2호	1층	2	838,553,801	403,932,199	1,242,486,000	124,248,600	186,372,900	186,372,900	124,248,600	124,248,600	124,248,600	124,248,600	124,248,600	248,497,200	
			2층	2	856,782,850	412,713,150	1,269,496,000	126,949,600	190,424,400	190,424,400	126,949,600	126,949,600	126,949,600	126,949,600	126,949,600	253,899,200	
			3층	2	861,340,450	414,908,550	1,276,249,000	127,624,900	191,437,350	191,437,350	127,624,900	127,624,900	127,624,900	127,624,900	127,624,900	255,249,800	
84E	12	302동 3호	1층	1	850,456,338	409,665,662	1,260,122,000	126,012,200	189,018,300	189,018,300	126,012,200	126,012,200	126,012,200	126,012,200	252,024,400		
			2층	1	868,943,873	418,571,127	1,287,515,000	128,751,500	193,127,250	193,127,250	128,751,500	128,751,500	128,751,500	128,751,500	257,503,000		
			3층	1	873,566,264	420,797,736	1,294,364,000	129,436,400	194,154,600	194,154,600	129,436,400	129,436,400	129,436,400	129,436,400	258,872,800		
		302동 5호	2층	1	860,254,536	414,385,464	1,274,640,000	127,464,000	191,196,000	191,196,000	127,464,000	127,464,000	127,464,000	127,464,000	127,464,000	254,928,000	
			3~4층	2	864,830,358	416,589,642	1,281,420,000	128,142,000	192,213,000	192,213,000	128,142,000	128,142,000	128,142,000	128,142,000	128,142,000	256,284,000	
		303동 3호	1층	1	841,951,248	405,568,752	1,247,520,000	124,752,000	187,128,000	187,128,000	124,752,000	124,752,000	124,752,000	124,752,000	124,752,000	249,504,000	
			2층	1	860,254,536	414,385,464	1,274,640,000	127,464,000	191,196,000	191,196,000	127,464,000	127,464,000	127,464,000	127,464,000	127,464,000	254,928,000	
			3층	1	864,830,358	416,589,642	1,281,420,000	128,142,000	192,213,000	192,213,000	128,142,000	128,142,000	128,142,000	128,142,000	128,142,000	256,284,000	
		303동 5호	2층	1	851,565,198	410,199,802	1,261,765,000	126,176,500	189,264,750	189,264,750	126,176,500	126,176,500	126,176,500	126,176,500	126,176,500	252,353,000	
			3~4층	2	856,095,127	412,381,873	1,268,477,000	126,847,700	190,271,550	190,271,550	126,847,700	126,847,700	126,847,700	126,847,700	126,847,700	253,695,400	
84F	4	306동 4호	1층	1	856,070,831	412,370,169	1,268,441,000	126,844,100	190,266,150	190,266,150	126,844,100	126,844,100	126,844,100	126,844,100	253,688,200		
			2층	1	874,681,198	421,334,802	1,296,016,000	129,601,600	194,402,400	194,402,400	129,601,600	129,601,600	129,601,600	129,601,600	259,203,200		
			3~4층	2	879,333,959	423,576,041	1,302,910,000	130,291,000	195,436,500	195,436,500	130,291,000	130,291,000	130,291,000	130,291,000	260,582,000		
84G	15	307동 1, 2, 3, 4호	1층	3	927,204,616	446,635,384	1,373,840,000	137,384,000	206,076,000	206,076,000	137,384,000	137,384,000	137,384,000	137,384,000	274,768,000		
			2층	4	947,361,179	456,344,821	1,403,706,000	140,370,600	210,555,900	210,555,900	140,370,600	140,370,600	140,370,600	140,370,600	280,741,200		
			3층	4	952,400,658	458,772,342	1,411,173,000	141,117,300	211,675,950	211,675,950	141,117,300	141,117,300	141,117,300	141,117,300	282,234,600		
		307동 5, 6호	2층	2	966,894,810	465,754,190	1,432,649,000	143,264,900	214,897,350	214,897,350	143,264,900	143,264,900	143,264,900	143,264,900	143,264,900	286,529,800	
			3층	2	972,037,548	468,231,452	1,440,269,000	144,026,900	216,040,350	216,040,350	144,026,900	144,026,900	144,026,900	288,053,800			
99A	22	305동 1, 2, 3, 4호 306동 1, 2호	1층	6	985,213,585	519,848,415	1,505,062,000	150,506,200	225,759,300	225,759,300	150,506,200	150,506,200	150,506,200	150,506,200	301,012,400		
			2층	6	1,006,630,788	531,149,212	1,537,780,000	153,778,000	230,667,000	230,667,000	153,778,000	153,778,000	153,778,000	153,778,000	307,556,000		
			3층	6	1,011,985,416	533,974,584	1,545,960,000	154,596,000	231,894,000	231,894,000	154,596,000	154,596,000	154,596,000	154,596,000	309,192,000		
		306동 3호	1층	1	1,005,527,132	530,566,868	1,536,094,000	153,609,400	230,414,100	230,414,100	153,609,400	153,609,400	153,609,400	153,609,400	307,218,800		
			2층	1	1,027,386,190	542,100,810	1,569,487,000	156,948,700	235,423,050	235,423,050	156,948,700	156,948,700	156,948,700	156,948,700	313,897,400		
			3~4층	2	1,032,850,791	544,984,209	1,577,835,000	157,783,500	236,675,250	236,675,250	157,783,500	157,783,500	157,783,500	315,567,000			
102A	1	210동 3호	2층	1	750,870,720	679,904,280	1,430,775,000	143,077,500	214,616,250	214,616,250	143,077,500	143,077,500	143,077,500	286,155,000			
102P	1	210동 4호	34층	1	877,708,058	794,753,942	1,672,462,000	167,246,200	250,869,300	250,869,300	167,246,200	167,246,200	167,246,200	334,492,4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분양금액을 책정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이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형은 건축비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음)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락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수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 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등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20A	41A	59A	59B	59C	59D	59E	59F	84A	84B	84C	84D	84E	84G	99A	합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8	8	5	-	1	-	3	-	2	-	-	-	-	28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7	7	4	-	-	1	3	1	1	1	-	1	-	2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7	7	5	-	1	-	2	1	2	1	-	-	-	27
	중소기업 근로자	2	-	7	6	5	-	1	-	3	1	1	1	-	-	-	27
	장애인	서울특별시	2	-	2	3	3	-	-	-	1	1	2	-	1	-	-
경기도		-	-	2	2	1	-	-	-	1	-	-	-	-	-	-	6

	인천광역시	-	-	2	2	1	-	-	-	1	-	-	-	-	-	-	6
	소계	7	-	35	35	24	-	3	1	14	4	8	3	1	1	-	136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서울시 거주자(50%)	-	-	18	18	12	-	2	1	7	2	4	2	1	1	1	69
	경기도 및 인천 거주자(50%)	-	-	18	18	12	-	1	-	7	2	4	1	-	-	1	64
	신혼부부 특별공급	13	1	63	65	43	-	5	2	26	8	14	6	2	2	-	25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	11	11	7	1	1	-	4	2	2	1	1	1	-	44
	생애최초 특별공급	6	-	31	32	21	-	2	1	13	4	7	3	1	1	-	122
	합 계	28	1	176	179	119	1	14	5	71	22	39	16	6	6	2	68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국토교통부 공문(주택기금과-1589)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m 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 (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 에게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를 선정함.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구분없이 주택형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람.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함.
- 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이 아닌 기타지역(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인정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에 한함)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10:00~14:00)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해당 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역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단,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5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0.20.	(해당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제한 및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에 따릅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 <td>건축물 종류</td> <td>지방세정 시가표준액</td>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 [별표 3])
 - ①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2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에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0.20	(해당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10,415,123원	9,908,674원~12,195,290원	10,452,641원~12,864,787원	11,312,132원~13,922,622원	12,171,623원~14,980,458원	13,031,114원~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사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사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사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 [별표 3])
 - ①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 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③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 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예비입주자 선정보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④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함)되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에서는 제외 됨
 - ⑤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2. 기타지역 :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용 60㎡초과 85㎡이하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p>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p> <p>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p>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p>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p>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p>

	<p>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2)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의거 무주택 세대원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제외)되지만 부양가족수 산정시에는 주택 소유 직계 존속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p>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당첨자 중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23.10.30.(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	2023.10.31.(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2023.10.31.(화) 09:00~17:30	
	2순위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23.11.1.(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청약 추천자는 정보취약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p>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p>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 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 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 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 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1.8.(수)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1.20.(월) ~ 2023.11.24.(금) (10:00~17: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1.8.(수) ~ 2023.11.17.(금) (10일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11.8.(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 TEL : 1600-6554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방문예약제 당사 홈페이지 (https://www.i-park.com/imun)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예비 순번 앞순위 우선, 추후 안내 예정)	특별공급	추후 당사 홈페이지 (https://www.i-park.com/imun) 공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별도 통보)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3.11.9 ~ 2023.11.17]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의 당첨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이문 아이파크 자이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 당첨자는 예비 순번 순으로 서류제출 기간을 따로 정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청약자에게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표1> 특별공급(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①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특별공급신청서는 견본주택 청약시 필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③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④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⑤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⑦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⑧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⑨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⑪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⑫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
	○	⑬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해외근무자	○		①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단신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②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③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④ 주민등록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 추천서(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⑤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기재 필수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에 비치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⑧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망
○	⑨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	○	①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공급			직계존속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③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 필수 함)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접수장소에 비치
	○	⑥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2] 참조)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⑧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⑨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전년도 기준)
	○	⑩ 자격요건 확인서	-	• 혼일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⑪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전국)(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⑫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본 모집공고 13페이지 자산보유기준 및 세부내역표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③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③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 참고)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⑥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전국)(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⑦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본 모집공고 15페이지 자산보유기준 및 세부내역표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	⑧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기재 필수)
		○	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	⑩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 본인 발급용
			②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③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④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⑤ 인장	대리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①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계약체결 전 청약자격 검증 서류 제출일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등기소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② 사업자 등록증(사본)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및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건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자산입증 서류목록	*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전국)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전국)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함	등기소

-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사·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세무서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①,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③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① 행정복지센터 ② 행정복지센터 ③ 위택스, 이택스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표4>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①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④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⑤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⑥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⑦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⑩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⑪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가점제 추가서류	○	①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부양가족 산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⑤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부양가족 산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⑧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③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④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		⑤ 인장	대리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무주택소명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2023.11.20(월) ~ 2023.11.24.(금) (5일간,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문 아이파크 자이 건본주택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하나은행	166-910017-27604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2(HDC현산, GS건설)	-
중도금/잔금	계약 체결시 세대별로 계좌부여 (가상계좌)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이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M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위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 101동 201호 홍길동 → 01010201홍길동 / 102동 1701호 김철수 → 01021701김철수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166-910017-27604]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M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③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④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수
		○	⑤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⑥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 계약 시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분양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린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함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별표 1]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에 따라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공급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방법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발코니확장 계약 포함)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 계약체결일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방법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또는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터넷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	--

-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분양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세대의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①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② 10억원 초과 : 35만원
 - 발코니 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③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청약 관련 사항**
 -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해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제한되는 비율 만큼은 수분양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 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 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관련 내부 규정 변경 또는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 (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라며 법인은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

- 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 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②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합니다.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분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③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분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층·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 사전방문시기 등은 관련법령등의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 3-1BL(1,2단지) : 20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3-2BL(3단지) : 2026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으로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행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Ⅷ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등

■ 추가 선택 품목_공통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주문제작에 의해 진행되므로 해당 공사의 착수(발주 및 공사착수 사전행위 등을 포함)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정확한 일자, 추가선택 품목 및 금액, 납부계좌 등은 추후 통보함)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유상옵션 계약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시공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59A1,A2	17,300,000	1,730,000	15,570,000

3-1BL(1,2단지)	59B1,B2	17,300,000	1,730,000	15,570,000
	59C	17,300,000	1,730,000	15,570,000
	84A	19,500,000	1,950,000	17,550,000
	84B	19,500,000	1,950,000	17,550,000
	84C	19,500,000	1,950,000	17,550,000
	102A	18,500,000	1,850,000	16,650,000
	102P	17,500,000	1,750,000	15,750,000
3-2BL(3단지)	59D	18,800,000	1,880,000	16,920,000
	59E	18,800,000	1,880,000	16,920,000
	59F	18,800,000	1,880,000	16,920,000
	84D	21,000,000	2,100,000	18,900,000
	84E	21,000,000	2,100,000	18,900,000
	84F	21,000,000	2,100,000	18,900,000
	84G	21,000,000	2,100,000	18,900,000
	99A	22,000,000	2,200,000	19,800,000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획(추후 별도 안내예정)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획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획과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또는 변경 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확장형과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희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희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또한, 평면 및 시공여건에 따라 선희통 또는 배수구는 이문아이 파크자이 홈페이지상 표현된 위치와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희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입면변화 및 개방형 발코니 적용 여부가 세대별로 다르며 적용여부를 모형에서 그리고 계약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플러스 옵션]

- 추가선택 품목은 주택형 및 타입별로 시스템에어컨, 렌지후드, 수전, 도기, 비데, 전기쿠팡, 거실 아트월, 현관중문 등임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 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함.)

■ 시스템에어컨 판매가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평형	구분	설치위치		판매가	비고		
3-1BL (1,2단지)	41A	GRILL TYPE (LG) 무풍GRILLTYPE(삼성)	전체	(3)	거실+침실1+침실2	4,600,000	
			기본	(2)	거실+침실1	3,200,000	
		공기청정 GRILL TYPE (LG) 무풍공기청정GRILLTYPE(삼성)	전체	(3)	거실+침실1+침실2	5,430,000	
			기본	(2)	거실+침실1	3,750,000	
	59A1,A2	GRILL TYPE (LG) 무풍GRILLTYPE(삼성)	전체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6,220,000	
			기본	(2)	거실+안방	3,510,000	
		공기청정 GRILL TYPE (LG) 무풍공기청정GRILLTYPE(삼성)	전체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7,330,000	
			기본	(2)	거실+안방	4,060,000	
	59B1,B2	GRILL TYPE (LG) 무풍GRILLTYPE(삼성)	전체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6,220,000	
			기본	(2)	거실+안방	3,510,000	
		공기청정 GRILL TYPE (LG) 무풍공기청정GRILLTYPE(삼성)	전체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7,330,000	
			기본	(2)	거실+안방	4,060,000	
	59C	GRILL TYPE (LG) 무풍GRILLTYPE(삼성)	전체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6,220,000	
			기본	(2)	거실+안방	3,510,000	
		공기청정 GRILL TYPE (LG) 무풍공기청정GRILLTYPE(삼성)	전체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7,330,000	
			기본	(2)	거실+안방	4,060,000	
84A	GRILL TYPE (LG) 무풍GRILLTYPE(삼성)	전체	(5)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860,000		
		기본	(3)	거실+주방+안방	4,890,000		
	공기청정 GRILL TYPE (LG) 무풍공기청정GRILLTYPE(삼성)	전체	(5)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240,000		
		기본	(3)	거실+주방+안방	5,710,000		
84B	GRILL TYPE (LG)	전체	(5)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860,000		

유형	구분		제조사	판매가	비고
빌트인 냉장고		BRS685030SR	삼성	5,390,000	
		S715SI24B	LG	5,75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R2/L2	LG	1,250,000	
		RQ22K5(L/R)01EC	삼성	1,250,000	
식기세척기		DW60T7065SS	삼성	850,000	
		DUB22SB2	LG	1,190,000	
		DWA-90R5B	SK매직	1,290,000	
오븐		스팀오븐(EON-B401SA)	SK매직	650,000	
		MZ385EBT1	LG	410,000	
		NQ50T8539BK	삼성	870,000	
욕실팬	욕실1개타입	휴젠프3	힘펠	650,000	
	욕실2개타입	휴젠프3	힘펠	1,300,000	
거실샤시 UP	59A1,A2		REHAU	4,990,000	
	84A		REHAU	5,560,000	
	102A		REHAU	5,760,000	
	102P		REHAU	5,980,000	
중문	59A1,A2	스윙도어		1,940,000	
	84B	원슬라이딩		1,280,000	
평면옵션	84B	수납강화형		1,890,000	
레인지후드		HCL-90		1,15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59A1,A2			1,470,000	
	84B			1,500,000	
주방 세라믹타일 (벽+상판)	59A1,A2			5,550,000	
	84B			8,05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시트판넬)	59A1,A2			9,350,000	
	84B	확장기본형		23,900,000	
	84B	수납강화형		23,900,000	
마루(국산)	59A1,A2		구정마루	2,910,000	
	84B		구정마루	3,970,000	
싱크볼(국산)+수전(수입)	59A1,A2	수전(파포니락-RO285CR)		680,000	1개소 설치 기준
	59B1,B2	수전(파포니락-RO285CR)		680,000	1개소 설치 기준
	59C	수전(파포니락-RO285CR)		680,000	1개소 설치 기준
	84A	수전(파포니락-RO285CR)		680,000	1개소 설치 기준
	84B	수전(파포니락-RO285CR)		680,000	1개소 설치 기준
	84C	수전(파포니락-RO285CR)		680,000	1개소 설치 기준
	102A	수전(파포니락-RO285CR)		680,000	1개소 설치 기준
	102P	수전(파포니락-RO285CR)		680,000	1개소 설치 기준
	119PA	수전(파포니락-RO285CR)		680,000	1개소 설치 기준
주방식탁등	59A1,A2			470,000	
	59B1,B2			470,000	
	59C			470,000	
	84A			470,000	
	84B			470,000	
	84C			470,000	
조명옵션	59A1,A2			6,550,000	

	84B		7,870,000
안방 붙박이장	59A1,A2	리바트	3,380,000
	59B1,A2	리바트	3,130,000
	59C	리바트	3,380,000
	84A	리바트	3,560,000
	84B	리바트	3,560,000
	84C	리바트	3,560,000
	99A	리바트	3,770,000

IX 유의사항

- 일반 공통
-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http://hndci-park.com/imu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합니다.
- ※ 단지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세대 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목, 조정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최저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티(캐노피 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건축계획 변경과 조정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 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켓,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과 별도 유상옵션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및 유상옵션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마감패턴, 옹벽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및 단지레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소방협의 결과에 따른 일부세대의 대피공간에는 하향식 피난구(살리고)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살리고) 위에는 물건을 적재하면 안됩니다.
-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리스트,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 견본주택에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 시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기기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약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홈네트워크설비
- ※ 견본주택에는 59A, 84B형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점검구, D/A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4호(2019.8.8)에 따라, 3-1-1BL의 2곳(101동, 102동, 103동 동측과 108동, 106동, 105동 동측), 3-1-2BL의 2곳(201동, 202동 동측과 209동, 208동, 205동 서측) 등 총 4곳에 위치한 사업부지내 사유지의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보행통로는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공공보행통로에 대하여 “공공보행통로 사용동의서”를 작성 및 공증하여 준공 전 관할청에 제출하여, 준공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가 공공보행통로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세대 내부

-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벽체나 천장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 일부 발코니에는 배관이 노출되며, 각 세대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TYPE에 따라서 주방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의 가스계량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방발코니 및 주방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주방인터넷tv, 욕실스피커폰, 스마트스위치, 통합스위치, 디지털도어락, 현관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스마트홈 IoT연동 가전제품은 IoT서비스제공사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
- ※ IoT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떤 사업자도 가능하며, 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세대에 IoT 서비스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기기제어(월패드 터치스크린 및 스마트폰용 홈네트워크 APP을 이용한 제어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IoT운영사의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단, IoT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지내 홈네트워크 서버 인터넷회선비용은 준공 후 1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 ※ 본 아파트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DC)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AC)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인터넷TV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방인터넷TV는 WiFi 전용 모델로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민이 개별 구축하여야 합니다.
- ※ 세대 내 공기감지센서(무선AP일체형)는 기본설치 품목입니다.
-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워싱기구, 약세사리, 바닥 배수구, 수전, 선홍통 등은 위치 및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 복도 및 세대 전용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랜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랜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갯)가 설치됩니다.(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온수 분배기 및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바닥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에는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마감기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공사 시, 석재류, 타일류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의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써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발코니,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공 시 일부 세대의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용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발코니 난간(투시형, 콘크리트난간, 유리난간)의 높이와 사시 설치 높이는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가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손빨래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부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 설치되는 대피공간 대신 비상시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시 필히 확인하시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됩니다.
-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 보조주방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 발코니의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 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소방법에 의해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 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 선택에 따라 위치, 개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 실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 실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소제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음.
-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등급 또는 등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석재의 결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 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내부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 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소방법에 의해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세대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가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하부 필로티로 인하여 바닥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안방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살리고)가 설치되며, 화재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 부분 임대형세대의 경우 임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되어있어 해당경계벽에는 대피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 하향식 피난구(살리고)가 설치되는 외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방충망 및 그릴은 법규해석에 따라 추후 삭제 또는 수정 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내 창호위치는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의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을 설치하지 않음)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주택형별로 기본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 ※ 욕실 오배수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 가스쿡탑 설치시 가스차단기, 전기쿡탑 설치시(가스, 전기차단기), 전기+가스쿡탑제품(하이브리드) 설치시(가스,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도시가스 배관은 캡(플러그)마감되며, 별도로 가스기기와의 연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다용도실(세탁기실 및 발코니)의 바닥은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의 배수로 인하여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입면변화 및 개방형 발코니 적용 여부가 세대별로 다르며 적용여부를 모형에서 그리고 계약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 / 단지 내 환경

-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는 2.3m로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하며, 지하2층의 일부 구간만 2.7m로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차구획의 유효높이는 2.3m로 높이 과다차량은 주차가 불가하며 일부 구간은 2.7m로 택배차량 주차가 가능합니다.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일부 동은 인허가 변경 등에 의하여 일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수경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옥상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최상층세대 및 인근세대에 소음으로 생활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옥상휴게공간의 녹지는 유지관리 상 자갈포설, 인조잔디 등 다른 형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소방차량동선 및 소방차정차구역은 인허가 변경 및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 옥외 보안등 및 지하/지상층 CCTV는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관련기관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의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 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 및 판매시설, 실외기 및 환기설비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음.
-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경관조명 및 수경시설 설치,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 경관조명, 수경시설 설치,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 단지조경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주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소공원, 공공청사, 어린이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 및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역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3층 로비, 필로티 및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램프로 인한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3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 (모형/배치도/분양 카다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상돌출 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하채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데크, 건축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오수저류조(배기덕트포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상가,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출차 경고 알림음,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3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거실 유리난간의 파손 가능성으로 인해, 유리난간 상부로 이삿짐 반입이 불가하며, 입주 전 입주계획을 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 배정받은 날 엘리베이터로 반드시 이삿짐 운반을 하여야 합니다.
-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고,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개발계획(변경포함)에 따른 시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판상형과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수안테나, 피뢰침, 항공장애등,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 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태양광 발전설비는 104~108동, 201~210동 옥상에 설치됩니다.
-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주동 3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저층부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저층부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필로티 있는 102동은 제연 환풍의 그랄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석재 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저층세대는 주변건물의 영향으로 일조, 조망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발전기실, 제연환풍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동선 및 이용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조건 등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문주 형태나 크기,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조경 레벨 계획 변경으로 일부 필로티, 동출입구의 계단 및 램프 길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부세대는 특화된 동출입구에 따라 일부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쓰레기분리수거대는 각동마다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동마다 우편물수취함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일부동은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에 의해 단지 각 방위 간에 레벨차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부 주거동의 저층부 레벨은 인접 도로보다 낮게 조성됩니다.
- ※ 일부 동(101동, 103동, 106동, 201동, 208동, 209동)의 옥상, 지하층 환풍, 지상층EPS 등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거, 이동통신사업자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 ※ EPS/TPS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비여유공간 부족 시, 인접층 EPS/TPS내 이동통신사별 중계장치를 분할 설치합니다.(비주거)
- ※ 지상층 이동통신 전파환경개선을 위하여, 화단형 안테나의 추가 설비가 현장 협의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층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계 분은 현장 실시설계 이후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일부 지붕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상세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 장식물, 옥상조경 등)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내 빛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 판매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커뮤니티센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통신전자기기,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평면 및 단면 계획변경에 따라 외부 입면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경우 카탈로그를 우선합니다.
-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시설 투입구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의 내부 레이아웃, 외부 디자인은 인허가 과정 또는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입면, 평면, 단면, 창호계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동돌봄센터 및 노유자시설은 외부인에게도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여건

-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사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협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변경사항

-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열재 사양 및 공공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펌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X 기타 주요 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제8조	창의 기밀성능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한 2등급 이상 제품 적용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할 수 있는 부위는 제외)
제9조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제11조	단열재의 설치	적용	세대 내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치
제13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설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제14조	일괄소등스위치의 설치	적용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적용제외)
제15조	조명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설치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제17조	절수설비의 설치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1-1구역
 건축주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5.07.26.
 주소 : 서울특별시 중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층수 : 지하5층, 지상40층
 연면적 : 356,041.1100㎡ (평가연면적: 275,152.9800㎡)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토론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3-0065-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3.01.13.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최우수(그린+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3년 01월 13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개요

인증번호 : 22-주-에-14-0048
 평가자 : 신주영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문명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종료일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2-주-에-14-0048
 평가자 : 신주영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문명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종료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사항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항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69.3	1	48	96.7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제		69.3	1	48	96.7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실제		112.5	2	72	96.7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2.4	66.4	51.6	13.8
급탕	30.7	37.1	27.5	7.6
조명	6.2	5.5	15.1	2.6
환기		3.5	9.7	1.7
합계	69.3	112.5	103.9	25.7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서 연료의 재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냉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값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2023년 01월 13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1-1구역
 2. 신청자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3.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4. 성능등급 :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향성적 관련성능	생활용 소음 차단능력	★★★★
생활용적 관련성능	생활용 소음 차단능력	★★★★
화상일 급배수소음	화상일 급배수소음	★★★★
제한된 경제력의 차등성능	제한된 경제력의 차등성능	★★★★
최저소음	최저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벽성능	가벽성능	★★★★
수직구멍성능	수직구멍성능	★★★★
외구벽성능	외구벽성능	★★★★
저음차단기능	저음차단기능	★★★★
외구벽성능	외구벽성능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용 소음 차단능력	생활용 소음 차단능력	★★★★
가벽성능	가벽성능	★★★★
수직구멍성능	수직구멍성능	★★★★
외구벽성능	외구벽성능	★★★★
저음차단기능	저음차단기능	★★★★
외구벽성능	외구벽성능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거실내외 열차단기능	거실내외 열차단기능	★★★★
보통가도	보통가도	★★★★
교통부하 적함	교통부하 적함	★★★★
생활용 소음 차단능력	생활용 소음 차단능력	★★★★
가벽성능	가벽성능	★★★★
수직구멍성능	수직구멍성능	★★★★
외구벽성능	외구벽성능	★★★★
저음차단기능	저음차단기능	★★★★
외구벽성능	외구벽성능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용 소음 차단능력	생활용 소음 차단능력	★★★★
가벽성능	가벽성능	★★★★
수직구멍성능	수직구멍성능	★★★★
외구벽성능	외구벽성능	★★★★
저음차단기능	저음차단기능	★★★★
외구벽성능	외구벽성능	★★★★

라.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용 소음 차단능력	생활용 소음 차단능력	★★★★
가벽성능	가벽성능	★★★★
수직구멍성능	수직구멍성능	★★★★
외구벽성능	외구벽성능	★★★★
저음차단기능	저음차단기능	★★★★
외구벽성능	외구벽성능	★★★★

위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한국부동산원장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	1,107,484,244,800원	01282023-101-0006200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칭함)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용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택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택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주)엠앤디종합건축사사무소	(주)토펙엔지니어링	(주)세정이에프씨/(주)아이비엔지니어링
감리금액	13,581,763,800원	2,007,506,000원	1,455,300,000원/566,5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GS건설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64171-0006477	110111-6740008	110111-0002694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23길 10, 3층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한강로3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자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이문 아이파크 자이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번지
- 사업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 412-1번지 일대
- 홈페이지 : <https://www.i-park.com/imun>
- 분양문의 : 1600-6554

